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26
----------	---------

제출연월일	2005. 5.
제 출 자	거창군수

■ 개정이유

- 군 단위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과 단위 재난관리 전담 조직 설치
- 2005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우리군의 특색있는 행정수요와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제로 전환
-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운용을 위해 실시한 자체조직진단 결과에 나타난 현행 조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요자중심 행정, 기능통합, 핵심역량 집중, 조직유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실·과의 설치 (안 제3조)

-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 폐지
-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 재해·재난의 예방 업무 : 건설과에서 이관
 - 재해복구와 지역협력업무 신설
 - 민방위 업무와 120봉사대 업무 : 자치지원과에서 이관
- 직제순서·명칭변경 및 업무 기능이관

나. 여유기구 설치(안 제4조)

- 전략사업추진단 신설
 - 전략개발·교육지원·전략사업 추진

다. 직속기관의 업무 신설 (안 제5조)

-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에 따른 농정업무 기능이관

■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102조 내지 106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행자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과·단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단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건소장, 사업소의 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군 본청

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②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 가. 군정 전반의 종합 기획·조정 에 관한사항
- 나. 홍보 및 공보에 관한사항
- 다. 예산편성·운영 및 공기업, 경영수익에 관한사항
- 라. 군 행정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사항
- 마. 법제·쟁송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바. 행정전산·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사항

2. 종합민원실장

- 가. 창구민원과 민원행정에 관한사항
- 나. 지적공부의 등록·관리 및 지적민원 처리에 관한사항
- 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부동산에 관한사항

- 라. 토지관련 민원에 관한사항
- 마.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사항

3. 행정과장

- 가. 공무원 인사 및 조직 운용에 관한사항
- 나. 각종행사 및 읍·면행정지도,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사항
- 다. 공무원단체 운영지원 및 공무원 후생에 관한사항
- 라. 지방행정구역 조정, 선거, 주민등록 및 대외협력에 관한사항
- 마. 지역혁신·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사항

4. 재무과장

- 가. 지방세 부과 및 세무조사에 관한사항
- 나. 경리·계약·용도 및 결산에 관한사항
- 다.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에 관한사항
- 라.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사항
- 마.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평가에 관한사항

5. 경제과장

- 가. 지역경제 발전 및 산업단지에 관한사항
- 나. 상공 및 에너지에 관한사항
- 다. 투자, 통상협력, 국내외 시장 및 판로개척에 관한사항
- 라.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사항

6. 문화관광과장

- 가. 문화예술 및 문화재관리에 관한사항
- 나. 관광진흥, 관광지 개발 및 관광시설에 관한사항
- 다. 관광홍보·축제 및 관광행사에 관한사항
- 라. 체육진흥 및 여가문화에 관한사항

7. 사회복지과장

- 가. 군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에 관한사항
- 나. 사회복지체계 및 지역사회복지의 기획·개발에 관한사항
- 다. 노인복지증진에 관한사항
- 라. 여성복지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사항
- 마. 장애인,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관리에 관한사항

8. 산림환경과장

- 가. 산림사업 및 보호에 관한사항
- 나. 산림자원 관리·이용 및 산지소득에 관한사항
- 다.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 등 푸른 거창 조성에 관한사항
- 라. 환경관리보존 및 환경정책에 관한사항
- 마. 폐기물 관리, 자연보전,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사항
- 바. 수질, 토양의 개선 및 보전에 관한사항

9. 건설과장

- 가. 건설행정 및 보상업무에 관한사항
- 나. 토목공사 및 도로에 관한사항
- 다. 농업기반조성에 관한사항

10. 도시건축과장

- 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사항
- 나. 건축사업 및 건축행정에 관한사항
- 다. 건축허가·신고 및 건축 관련 민원에 관한사항

11. 재난안전관리과장

- 가. 재해·재난의 예방에 관한사항
- 나. 자연재해 및 하천에 관한사항
- 다. 인적재난 및 120봉사대 운영에 관한사항
- 라. 민방위에 관한사항

제4조(여유기구) 다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전략사업추진단을 둔다.

1. 군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 처리 및 군 전략에 관한사항
2.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사항
3.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5조(설치) 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및 농업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59-19번지에 둔다.

제6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및 농업인 지원에 관한사항
2.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사항
3. 축산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사항
4. 농촌생활개선에 관한사항
5.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조정
6.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업경영개선에 관한사항
7. 영농·학습단체 육성 지원 및 지도에 관한사항
8. 기술 벤처농업,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지도에 관한사항

9.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및 환경농업 기술지도 보급에 관한사항
10. 과수재배기술 개발 및 실증시험에 관한사항
11. 식량작물, 원예, 특용작물 등의 생산, 재배 및 기술지도에 관한사항
12. 농축산물의 유통시설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3. 유기농 연구개발에 관한사항
14. 농업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8조(설치) ① 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다음사무를 수행한다.

1.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에 관한사항
4. 결핵, 한센병, 성병 등 전염병 예방 및 진료에 관한 사항
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

③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1절 상하수도사업소

제11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둔다.

② 상하수도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50번지에 둔다.

제12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사무를 관장한다.

1.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및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사항
2. 상수도 시설·유지관리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사항
3. 하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제2절 교육문화센터

제14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문화예술활동 등에 관한 편의와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문화센터를 둔다.

② 교육문화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16-5번지에 둔다.

제15조(소장) 교육문화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종 교육·문화예술행사의 기획·유치 및 시설관리에 관한사항
2. 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3.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제3절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제17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사건관리사업소를 둔다.

② 거창사건관리사업소는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551번지에 둔다.

제18조(소장)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사무를 관장한다.

1. 거창사건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2. 거창사건희생자 묘역 및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제4절 수승대관광지관리사무소

제20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승대관광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수승대관광지관리사무소를 둔다.

② 수승대관광지관리사무소는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750-3번지에 둔다.

제21조(소장) 수승대관광지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사무를 관장한다.

1. 수승대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사항
2. 수승대 자연경관보호 및 관광자원 관리에 관한사항

제5장 읍·면

제2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행정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5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자치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 ②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지역개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 ③ 거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지역개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 ④ 거창군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 ⑤ 거창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호서식중 "내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 ⑥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자치행정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 ⑦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 ⑧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 ⑨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 ⑩ 거창군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 ⑪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 ⑫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환경녹지과장"을 "산림환경과장"으로 한다.
- ⑬ 거창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 ⑭ 거창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도시환경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 ⑮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보건소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 ⑯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
(제8조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거창군 보건소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21번지	거창군 일원
주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711번지	주상면 일원
옹양면 보건지소	거창군 옹양면 노현리 217-11번지	옹양면 일원
고제면 보건지소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200-1번지	고제면 일원
북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391-3번지	북상면 일원
위천면 보건지소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03-3번지	위천면 일원
마리면 보건지소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247-4번지	마리면 일원
남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631-4번지	남상면 일원
신원면 보건지소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187-5번지	신원면 일원
가조면 보건지소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42-8번지	가조면 일원
가북면 보건지소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887-3번지	가북면 일원
거기 보건진료소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87-10	거기1·2·3구, 남산1·2·3구
강천 보건진료소	거창군 옹양면 산포리 1418-2	산포, 우량, 석정, 강천, 금광, 어인, 용전, 군암
아주 보건진료소	거창군 옹양면 신촌리 1418-2	송산, 아주, 한기, 신촌, 왕암, 오산, 장지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구송 보건진료소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571	탑선, 원기, 원봉계, 와룡, 용초, 구송, 둔기
개명 보건진료소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621-1	개명1,2구, 수내, 손항, 온곡
소정 보건진료소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239-6	중산, 소정, 개삼
월성 보건진료소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083-8	산수, 월성, 내계, 황점
모전 보건진료소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726-3	모전, 석동, 원당, 무월, 당산
고학 보건진료소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1130-5	병항, 고신, 고대, 창촌
율리 보건진료소	거창군 마리면 율리 176-1	풍계, 상율
임불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1983-1	임불, 남불, 월포, 전척, 고척
진목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155	춘전, 진목, 남진, 동령, 신기, 둔동
지산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906-4	자하, 신기, 장전, 천동, 대사, 오가
대현 보건진료소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970	내외탐, 소야, 대현, 비곡
양지 보건진료소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262-1	월동, 양지, 수옥, 저전, 감악, 구사, 신기, 수다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도리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조면 도리 1221	대학동, 화곡, 도산당, 녹동, 부산
내촌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97-3	몽석, 내촌, 송정, 용암, 개금
중촌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1872-1	심방, 회남, 중촌, 추동